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6. 28 선고 2021가단217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정 담당변호사 권정택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11. 22.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1. 11. 22. 접수 제61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1. 11. 22. 접수 제6117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6. 8. E (주)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20. 5. 18. E (주)에서 D에 대한 원리금 4,942,236원과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D의 부친인 F는 2021. 9. 16.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1. 11. 22.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1991. 6. 18. F가 건축물대장에 소유권 신고만 마친 미등기 건물로서 피고가 2021. 11. 2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다. F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G, H, 피고, I, D, J, K이 있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 무렵 D에게는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7,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 중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의 실질이 상속포기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의분할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상속포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D의 경제 형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분인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3. 원상회복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수정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이천시 L 대 472㎡
2. 경기도 이천시 M 답 527㎡
3. 경기도 이천시 N 답 179㎡
4. 경기도 이천시 O 도로 557㎡ 중 20분의 4 지분
5. 경기도 이천시 P 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이천시 Q

연화조 스라브지붕 농가주택

1층 91.45㎡, 끝.

